



2002년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중 개정령

조합 정보기술팀 제공

재정경제부령 제236호와 관련한 골판지포장제조 관련 2002년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이 지정고시되어, 관세율 8%(물품가액의)중 50%를 감면하는 제도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우리조합에서는 지난해 업계의 의견을 조희한 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요청을 한 결과, 주요설비중 편면골판지제조기와 양면골판지제조기를 골판지 제조기로 통합하고, 골판지 웹조절장치를 신규지정하여 총 8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지정 받았습니다.

연번	세 번	부 호	품 명	규 격
39	8422 8479	40 89	결속기 또는 포장기(결속기·포장기 및 튜빙기를 포함한다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. 2. 종이가공제품(기저귀·생리대·화장지·키친타 및 미용지에 한한다), 롤(Roll) 또는 시트(Sheet)상태의 완성된 종이제품을 투입·정렬·포장·실링(Sealing) 및 자동취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. 포장능력이 분당 50백(bag/min) 이상인 것 나. 종이상자에 포장하거나 필름 또는 튜브(Tube)로 포장하는 것으로서 포장능력이 분당 6케이스(case/min) 이상 또는 분당 6번들(bundle/min) 이상인 것 8. 롤(Roll) 또는 시트(Sheet)상태의 완성된 종이제품을 투입·정렬·포장·실링 또는 테이핑 및 자동취출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(roll/h) 이상인 것 또는 분당 14림(ream/min) 이상인 것



연번	세 번	부 호	품 명	규 격
59	8428 8439 8441 8444 8449 8456	90 10,80 10,99	절단기(Slitter를 포함한다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. 2. 알루미늄박·알루미늄판·종이·필름·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(Trimming)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10. 제지용으로서 최대재단폭이 43센티미터(cm) 이하인 것 또는 130센티미터(cm)를 초과하는 것
70	8439	20,30	골판지제조기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평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으로서 지폭이 2천밀리미터(mm) 이상이고,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(m/min) 이상이며, 핑거리스(Fingerless)형에 한한다.
71	8439	30	오토스플라이서 (Auto Splicer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지폭이 2천밀리미터(mm) 이상이고,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(m/min) 이상인 것에 한한다.
74	8439 8441	99 80	골판지웹(Web)조절장치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제조설비용으로서 골판지웹의 장력과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.
80	8441	30	플렉소다이커터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상자제조용으로서 인쇄 및 로터리타입은 급지면적이 2천400밀리미터(mm)×1천600밀리미터(mm) 이상이고, 평판타입은 1천600밀리미터(mm)×1천100밀리미터(mm) 이상인 것으로서 인쇄기능이 있으며, 절단최대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에 한한다.



연번	세 번	부 호	품 명	규 격
81	8441	30	플렉소홀더글루어 및 스티처(Flexo Folder Gluer & Stitcher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골판지상자제조시 인쇄공정 및 봉합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며, 최대처리속도가 풀봉합일 경우에는 분당 200매 이상, 철박음의 경우에는 분당 1천회 이상인 것에 한한다.
82	8441	80	전자자동제어장치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의 골판지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서 시간당 최대처리용량이 2천500리터(l/h) 이상인 것에 한한다.

체계적인 골판지포장의 품질관리를 도와 줍니다.

우리조합에서는 골판지포장 기술지도사업에 계획에 따라 조합원사의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제조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, 골판지포장관련 시험설비 (피열강도 시험기, 압축강도시험기, 인장강도 시험기등)를 사용하기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4월 23일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따라서 각 조합원사 및 골판지포장관련 USER등의 생산 및 품질부서의 관계자께서는 골판지, 골판지상자 및 골판지원지 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우리 조합 정보기술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